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42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2일

발의자 : 최훈종 의원

1. 제안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 바.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 2. 13.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중

바. 부서협의 결과(자원순환과)

⇒ **부서의견 일부반영**

- 환경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하는 규정을 추가 의견 : 부서의견 미반영
- 지원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제안 : 부서의견 반영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촌폐비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수거단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

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9.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2024. 01. 10. 현재)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1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2-27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2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1-10	주거환경국 자원순환과	
3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9-27	푸른환경사업본 부 자원순환과	
4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5-15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5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06	안전도시국 환경보호과	
6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2-15	환경국 자원순환과	
7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7-09	기업환경국 자원관리과	
8	경기도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4-29	기후환경에너지 국 자원순환과	
9	강원특별자 치도 강릉시	강릉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2-27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1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2-26	환경과	
11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15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1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1-15	환경과	
13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0-04	도시재생사업본 부 자원순환과	
14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9-22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1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9-21	교통환경산림국 자원순환과	
1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9-15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7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	2023-09-15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18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9-11	경제문화국 자원순환과	
1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7-26	관광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20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7-10	문화예술관광국 세계유산과	
21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7-03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22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6-09	안전건설국 자원순환과	
23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5-30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	
2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5-04	환경관리과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2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5-01	환경자원사업소	
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4-20	균형건설국 환경과	
27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4-18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28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4-11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2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3-31	환경수질과	
30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2-01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3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01-13	자치행정국 환경과	
32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15	환경사업소	
3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11-18	환경국 자원순환과	
3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15	지역개발국 환경과	
35	경상남도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08-04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3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04-19	환경과	
37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2-21	농림경제국 환경과	
38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2-15	행정지원국 청소자원과	
39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1-29	환경관리과	
40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0-07	환경과	
41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10-06	환경축산과	
42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2021-09-30	안전건설국 환경과	
43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9-14	환경국 자원순환과	
44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7-15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45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6	환경축산과	
46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6-17	환경과	
47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5-21	행정복지국 환경과	
48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3-23	도시환경과	

연 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 · 개정 일	소관부서	비 고
49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1-02-25	문화복지국 환경기후과	
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30	건설안전국 환경과	
51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2020-03-16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5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03-06	관광문화환경국 도시미화과	
5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01-31	산업건설국 환경과	
5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9-20	기후환경국 환경관리과	
55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8-08	경제산업국 자원순환과	
56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7-19	환경수자원본부 자원순환과	
57	전라북도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5-03	환경복지국 기후환경정책과	
58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8-03-05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5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7-08-09	환경보호과	
6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집자에 대한 지원 규정	2012-11-12	환경위생과	
6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2023-08-07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6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6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12-26	환경국 자원순환과	
64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12-08	환경복지국 기후환경정책과	
65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2-03-15	복지환경국 환경과	
66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01	경제산업국 청소자원과	
67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9-27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